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대학생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제2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를 “법 제3조제5호”로,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장기미상환자의 지정)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상환액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졸업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졸업 후 15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졸업 후 25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은 65세 이상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이자면제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두는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면제를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같은 법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20%

2.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25%

3.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제1호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과 제2호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이 모두 있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상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의무상환액이 제2호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을 초과할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상환율을 적용

제11조제2항 중 “직전 연도의 「소득세법」 제5조”를 “「소득세법」 제5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연도의 직전 연도”를 “연도”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의 직전 연도”를 “연도”로 한다.

제1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제1항 중 “직전”을 “전전”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

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환율의 경과조치) 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신설된 제10조제3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해당 조항의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제18조제2항 본문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제3조(장기미상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일 이후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이 영 시행 전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는 종전의 법 제3조제10항 및 제19조제6항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신설>	제2조(대학생의 범위 등)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② 법 제3조제5호----- ----- ----- -----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신설>

-----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제2조의2(장기미상환자의 지정)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비율”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상환액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졸업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다른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	-----
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1조제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3항-----
합계액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20%
	2.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25%
	3.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제1호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과 제2
	호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이
	모두 있는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상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의무상환액이 제2호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을 초과할 경
	우, 제1호에 해당하는 상환율
	을 적용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미상환자	② -----
의 기혼 여부의 인정은 채무자	-----
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	제5조-----
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
한다.	---
제12조(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12조(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② -----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 연도-----

를 기준으로 한다.	-----.
제13조(재산의 범위) ① (생략)	제13조(재산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6월 1일(이하 “소유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② ----- ----- 연도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7조(소득·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①·② (생략)	제17조(소득·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공익법인의 범위 등)	제44조의3(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① ----- ----- ----- ----- ----- ----- ----- ----- ----- 전전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가. ----- ----- ----- ----- ----- ----- ----- ----- -----

계산한다.	-----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나.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다. (현행과 같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학재정장학과	
연 락 처	044-203-6271